

# 전 주 지 방 법 원

## 결 정

사 건 2013가단7112 청구이의  
 원 고 황용 (420118-1063711)  
 전북 무주군 무주읍 신교로3길 10 105동 905호  
 송달장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0-6 1층  
 피 고 김지훈 (730918-1482231)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53-18 103동 1004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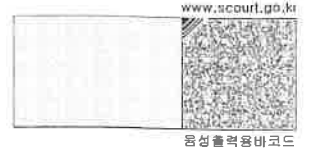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차6093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채권지급청구나 강제집행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108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취하한다.
4. 피고는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13카기215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제공한 담보의 취소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취소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아니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의 표시

####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차6093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





급명령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청구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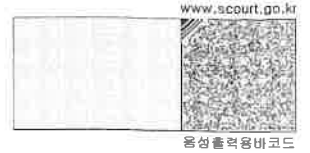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3. 6. 14.

판사 이 수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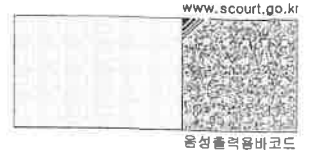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차 6093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급여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한 위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채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면은 내용증명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피고가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5. 전북대병원 취업을 전제로 활동비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북대병원 취업을 전제로 활동비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건네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금 10,000,000원을 건네받은 적이 일체 없습니다. 피고가 보낸 위와 같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원고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여 아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의 법에 대한 무지가 화근이 되어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어 확정된 지급명령을 토대로 원고의 급여에 압류까지 하였습니다.
4. 원고는 뒤늦게야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을 알고 피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는 부당한 내용증명에 기초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권 소에 이른 것입니다.





# 정본입니다.

2021. 10. 28.

전주지방법원

법원주사 최진기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